이리북초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17.09.15.
개정 2021.04.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소중하게 여긴다.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서로를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잘 지킨다.

③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 행동, 소음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휴식이 꼭 필요한 경우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상호 신뢰하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못쓰게 만들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시간에는 교사의 허락를 받아 특별실(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9조【급식시간】 학생들에게 균형을 이룬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사예절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식생활관에서 질서 및 식사 예절을 지켜 식사한다.
2. 학생은 영양 섭취 및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잔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3. 학교는 급식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제출받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자치활동】 ① 학교는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어린이회, 전교어린이회 등의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장한다.

② 학생은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이상을 어린이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가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 구성과 임기는 어린이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5항에 의거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타 학생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학교의 승인을 얻어 건전한 자율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및 상담을 지도 교사로 하여금 요구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⑤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정보에 관한 권리가 있다.

⑦ 학생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학생은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⑨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⑩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⑪ 학교는 학생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와 옷차림 등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⑫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⑮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⑯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⑰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⑲ 학생은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⑳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㉑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㉒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㉓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의무】 ① 학생은 국가의 교육 이념에 따라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및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적 지도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생은 사회의 준법 질서를 지키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생활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임장지도 할 수 있다.
1. 전체 모임 때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도박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기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절 교외생활

제15조【교외생활】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락을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학교 주변 및 문구점에서 불법 오락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9. 위험한 놀이기구 이용시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안전장비를 갖춰 이용한다.
10.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11. 학교는 익산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에 노력한다.

제1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7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7. 학교의 정보화기기 사용은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18조【전자기기의 사용】 전자기기 사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과정 중 무단 사용한 경우 1회 적발 시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3회 적발 시 그날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조치 할 수 있다.
3.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전자기기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9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교사는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시 안전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2. 학교는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학교는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4. 학교는 유관기관(경찰서, 시청, 소방서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제20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힘쓴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제21조【교사의 생활지도】 ① 학부모 회의, 가정통신문, 학부모와 교원간의 상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가정과 연계 지도에 노력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한다.

③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도한다.

제2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體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2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요구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제26조【학생포상】 학생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학교장은 자기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우수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업무담당자, 생활교육업무담당자, 교무기획업무담당자, 학년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경미한 사안은 업무담당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의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학부모는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학생징계】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6.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7.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는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담당 또는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또는 인성인권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회의 의결
4. 어린이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가급적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개정안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